

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

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

제6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제1항·제2항,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기판매사업자”는 “구역전기사업자”로 본다.

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2조의2(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)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.

제96조의2제1항중 “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”를 “안전공사,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.

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

제3조(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기사업”이라 함은 발전사업·송전사업·<u>배전사업</u> 및 전기판매사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기사업자”라 함은 발전사업자·송전사업자·<u>배전사업자</u>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.</p> <p>3. ~ 10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----- <u>배전사업·전기판매 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</u> -----.</p> <p>2. ----- · <u>배전사업자·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</u> -----.</p> <p>3.~10.(현행과같음)</p> <p>10의2. “구역전기사업”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업을 말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10의3. “구역전기사업자”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11. ~ 19. (생 략)	11.~19.(현행과같음)
제7조(사업의 허가) ① ~ ③ (생 략)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<u>사업구역별로</u>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. ⑤ 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배전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	제7조(사업의 허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</u> -----. ⑤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--- <u>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</u> -----.
〈신 설〉	3의2.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,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. (현행과 같음) ⑥ (생 략)
〈신 설〉	제16조의2(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거래)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.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(이하 “보완공급약관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.
제19조(전력량계의 설치 · 관리)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 · 관리하여야 한다.	제19조(전력량계의 설치 · 관리) ① 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 · 2. (생 략) 〈신 설〉	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구역전기사업자(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)
3. · 4. (생 략) ② (생 략) 〈신 설〉	3. · 4.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의2(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)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제27조(송전사업자등의 책무)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기의 수요·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	제27조(송전사업자등의 책무) 송전사업자·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-----.
제29조(전기의 수급조절등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·지변·전시·사변,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1.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. (생 략) 3.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	제29조(전기의 수급조절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전기판매사업자·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-----
제31조(전력거래) ① · ② (생 략) 〈신 설〉	제31조(전력거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34조(차액계약)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 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	제34조(차액계약) ----- 전기판매사업자·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회원의 자격)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 5. (생략)</p> <p>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①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 5.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<u>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</u> <u>〈신설〉</u></p> <p>6. ~ 13.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제66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</p> <p>① ~ ⑨ (생략) <u>〈신설〉</u>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96조의2(보고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·점검현황 등 전기안전 관한 사항을 시·도지사, <u>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</u>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② (생략)</p>	<p>제39조(회원의 자격)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</u>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6조(전기위원회의 기능) ①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-----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----- <u>5의2.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6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</p> <p>① ~ ⑨ (현행과 같음) <u>⑩제1항·제2항,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전기판매사업자”는 “구역전기사업자”로 본다.</u></p> <p>제92조의2(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)</p> <p>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.</p> <p>제96조의2(보고) ①----- ----- ----- <u>안전공사,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-----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